



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

| 구 분 | 2014년 | 2015년 |
|---|--|--|
| <p>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</p> <p>○ (한도) <신 설></p> <p>- '15년 이상 고정금리*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** : 1,500만원 *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** 매년 차입금의 70%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</p> <p>- '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: 500만원 <신 설></p> <p>○ (신청요건)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</p> <p>○ (주택요건)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공제제도 확대</p> <p>○ (한도) 확대 및 신설 - 만기 15년 이상 & 고정금리 & 비거치식 분할상환 : 1,800만원</p> <p>(좌 동)</p> <p>- 만기 10년 이상 & (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) : 300만원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(좌 동)</p> |
| <p>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액 >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</p> <p>○ 자녀세액공제(\$59의2) : 별도 규정 없음 (\$60②* 적용) * 감면액&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</p> <p>○ 연금계좌세액공제(\$59의3③) :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</p> <p>○ 보험료, 의료비 및 교육비(보험료등) 세액 공제(\$59의4⑦) :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 산출세액*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없음 * 산출세액 $\times \frac{\text{근로소득금액}}{\text{종합소득금액}}$</p> <p>○ 보험료등 + 기부금 세액공제(\$59의4⑧), 표준세액공제(\$59의4⑨) :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없음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(\$61)</p> <p>○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(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(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</p> |

| 구 분 | 2014년 | 2015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|------|------|------|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|-----|
| <p>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 세액공제</p> <p>○ (공제방식) 총급여 3% 초과 금액의 15%를 세액공제</p> <p>○ (한도 미적용)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<추 가></p> <p>○ (700만원 한도 적용)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</p> | <p>○ (좌 동)</p> <p>○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</p> <p>-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 시술비*</p> <p>*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(체내·체외인공수정 포함)시 소요된 비용</p> <p>○ (좌 동)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평생교육법에 따른 초·중· 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초·중·고등학생 교육비 공제</p> <p>○ 공제대상 교육기관 : 초·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</p> <p>○ 공제한도 : 1인당 연 300만원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</p> <p>○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·중·고등 학교를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연금보험료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 순위로 공제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 되어 있지 않음</p> <p>※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,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 순서 규정</p> <p>○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계좌(연금저축+퇴직연금)에 납입한 금액의 12%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,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)를 세액공제</p> <p>○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: 납입 금액 기준 연 400만원</p> | <p>○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</p> <p>-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 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</p> <p>※ (예시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63 1462 1335 1615"> <thead> <tr> <th>연금저축</th> <th>퇴직연금</th> <th>공제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0</td> <td>700</td> <td>700</td> </tr> <tr> <td>200</td> <td>500</td> <td>700</td> </tr> <tr> <td>500</td> <td>200</td> <td>600</td> </tr> <tr> <td>700</td> <td>0</td> <td>4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연금저축 | 퇴직연금 | 공제금액 | 0 | 700 | 700 | 200 | 500 | 700 | 500 | 200 | 600 | 700 | 0 | 400 |
| 연금저축 | 퇴직연금 | 공제금액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0 | 700 | 7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00 | 500 | 7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00 | 200 | 6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00 | 0 | 4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(ex. 경영성과급 등)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<신 설></p> | <p>○ 급여 적립 요건</p> <p>- 근로자가 납입여부·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구 분 | 2014년 | 2015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의 범위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무원 직급보조비 추가 |
|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○ (공제대상) 창투조합, 벤처조합, 벤처기업 등에 출자 ○ (소득공제율) - 창투조합,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: 투자 금액의 10% -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투자 : 투자금액의 30~50% ※ 5,000만원 이하분 : 50%, 5,000만원 초과분 : 30% ○ (공제한도) 종합소득금액 50% ○ 적용기한 : '14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- (좌 동) - 1,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% → 100%로 인상 ※ 1,500만원 이하분 : 100%, 1,5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분 : 50%, 5,000만원 초과분 : 30% ○ (좌 동) ○ 적용기한 3년 연장(~'17.12.31.) |
|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 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)과 양도 소득 과세방식2)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) 근로소득 과세방식 :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) 양도소득 과세방식 :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○ 적격스톡옵션 : 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,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|
|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|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○ 특례내용 -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% 단일 세율 적용 ○ 적용기한 : '14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○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- 헤드쿼터 인증기업* : 적용기한 폐지 *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(사업전략, 인사관리, R&D 등) 지원·조정 업무 수행 - 그 외 기업 : '16.12.31.(2년 연장) |

| 구 분 | 2014년 | 2015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<input type="radio"/> 적용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, 노인(60세 이상) 및 장애인 <input type="radio"/> 지원내용 :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% 감면 <신 설> <input type="radio"/> 업종 : 농업, 임업, 제조업 등 -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, 금융 보험업 등 제외 <input type="radio"/> 적용기한 : '15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기간 연장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-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(3년→5년)] (좌 동) |
|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| <input type="checkbox"/> 납입 시 <input type="radio"/> 공제 한도 : 300만원 <input type="radio"/> 공제 대상 : 종합소득금액 <input type="checkbox"/> 수령 시 <input type="radio"/> 소득공제 받은 원금 : 비과세 <input type="radio"/> 운용수익 : 이자소득 과세 <input type="radio"/>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: 비과세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 대상 소득 변경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종합소득금액→사업소득금액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]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하여 퇴직소득 과세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|
|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<input type="radio"/> (내용) 납입금액 40% 공제 - 요건 :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- 한도 : 연간 납입액 120만원 | <input type="radio"/>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*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,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'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- 한도 : 연간 납입액 240만원 |
|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별 공제 방식 <input type="radio"/> 정치자금기부금*, 법정기부금, 지정 기부금 : 세액공제** * 10만원 이하 : 100/110 세액공제 ** 기부금×15% (3천만원 초과분 25%) <input type="radio"/> 우리사주조합기부금* : 소득공제 *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, 필요경비 산입 가능 |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소득공제→세액공제로 전환 |

| 구 분 | 2014년 | 2015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부양가족) 소득요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* 이하 <신 설> 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수준 · 총급여 333만원 × (1-근로소득공제 70%) =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금액 총급여 25%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율 - 신용카드 : 15% 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: 30% - 전통시장·대중교통비 : 30% - '15년 상반기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'13년 사용분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* : 40% * '13년 대비 '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<신 설>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한도: 300만원(전통시장·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: '16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(좌 동) - '15년 하반기, '16년 상반기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'14년 사용분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*: 50% * '14년 대비 '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|



참고

2015.5.13. 법률 개정내용 주요 내용(2014년 귀속부터 적용)

- 자녀 세액공제 확대 :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,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(종전 20만원) 세액공제
- 6세이하 세액공제 신설 : 6세이하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
- 출생 세액공제 신설 :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
- 연금계좌 세액 공제 확대
 -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,000만원) 이하 15% (종전 12%)
 -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(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) 15% (종전 12%)
- 표준세액공제 확대 : 13만원 (종전 12만원)
-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
 - 세액공제구간 확대
 - 한도 확대

| 산출세액 | 공제세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30만원 이하 (종전 50만원) | 55% |
| 130만원 초과 | 30% |

| 총급여 | 한 도 |
|----------|---|
| 33백만원 이하 | 74만원 |
| 70백만원 이하 | 74만원 - (총급여 - 33백만원) × 0.008 * 최저 66만원 |
| 70백만원 초과 | 66만원 - (총급여 - 70백만원) × 1/2 * 최저 50만원 |



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상세내용

1. 소득세법 개정 내용

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(소법 §52⑤⑥)

<개정이유>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·상환구조 개선 유도

| 종 전 | 개 정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<input type="radio"/> (한도) <신 설> - '15년 이상 고정금리*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** : 1,500만원 *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** 매년 차입금의 70%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- '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: 500만원 <신 설> <input type="radio"/> (신청요건)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<input type="radio"/> (주택요건)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공제제도 확대 <input type="radio"/> (한도) 확대 및 신설 - 만기 15년 이상 & 고정금리 & 비거치식 분할상환 : 1,800만원 (좌 동) - 만기 10년 이상 & (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) : 300만원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(단, 종전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)

②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
(소법 §59의3③, §59의4⑦⑧, §60, §61)

<개정이유> 납세협력비용 절감

| 종 전 | 개 정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액 >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○ 자녀세액공제(§59의2) : 별도 규정 없음(§60②* 적용) * 감면액&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○ 연금계좌세액공제(§59의3③) :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○ 보험료, 의료비 및 교육비(보험료등) 세액공제 (§59의4⑦) :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*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* 산출세액 × $\frac{\text{근로소득금액}}{\text{종합소득금액}}$ ○ 보험료등 + 기부금 세액공제(§59의4⑧), 표준세액 공제(§59의4⑨) :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(§61) ○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(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○ (좌 동) ○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(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③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(소법 §59의4②, 소령 §118의5)

<개정이유> 난임부부의 임신·출산 지원

| 종 전 | 개 정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 세액공제 ○ (공제방식) 총급여 3% 초과 금액의 15%를 세액공제 ○ (한도 미적용)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<추 가> ○ (700만원 한도 적용)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-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* *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(체내·체외인공 수정 포함)시 소요된 비용 ○ (좌 동)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④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(소법 §59의4③)

<개정이유> 초·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 제고

| 종 전 | 개 정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초·중·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대상 교육기관 : 초·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한도 : 1인당 연 300만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를 추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|

<적용시기> '15.1.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⑤ 연금보험료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(소법 §51의3, §61)

<개정이유>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순서를 명확화

| 종 전 | 개 정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※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,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 순서 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|

⑥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(소법 §59의3)

<개정이유>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유도

| 종 전 | 개 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|------|------|------|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|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계좌(연금저축+퇴직연금)에 납입한 금액의 12%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,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)를 세액공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: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-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※ (예시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연금저축</th> <th>퇴직연금</th> <th>공제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연금저축 | 퇴직연금 | 공제금액 | 0 | 700 | 700 | 200 | 500 | 700 | 500 | 200 | 600 | 700 | 0 | 400 |
| 연금저축 | 퇴직연금 | 공제금액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0 | 700 | 7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00 | 500 | 7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00 | 200 | 6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00 | 0 | 4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⑦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
(소령 §38②, 소칙 §15의3신설)

<개정이유>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방법을 명확화

| 종 전 | 개 정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(ex. 경영성과급 등)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급여 적립 요건 - 근로자가 납입여부·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 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

⑧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(소령 §38①)

<개정이유>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전환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

| 종 전 | 개 정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의 범위 <input type="checkbox"/> (법률)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의 급여 <input type="checkbox"/> (시행령)확인적 예시규정 - 기밀비, 교제비, 근로수당, 가족수당 등 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의 범위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- 공무원 직급보조비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⑨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(소득법 §50①)

<개정이유> 소득세 세부담 경감

| 종 전 | 개 정 (국회 계류중)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부양가족) 소득요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*이하 <신 설> 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수준 - 총급여 333만원 × (1 - 근로소득공제 70%) =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|

<적용시기> '16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2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

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(조특법 §16)

<개정이유>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 활성화

| 종 전 | 개 정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<input type="checkbox"/> (공제대상) 창투조합, 벤처조합, 벤처기업 등에 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(소득공제율) - 창투조합,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: 투자금액의 10% -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: 투자금액의 30~50% ※ 5,000만원 이하분: 50%, 5,000만원 초과분: 30% <input type="checkbox"/> (공제한도) 종합소득금액 50%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: '14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- 1,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% → 100%로 인상 ※ 1,500만원 이하분: 100%, 1,5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분: 50%, 5,000만원 초과분: 30%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3년 연장(~'17.12.31.)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투자·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(조특법 §16의3)

<개정이유>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지원

| 종 전 | 개 정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 ¹⁾ 과 양도소득 과세방식 ²⁾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) 근로소득 과세방식: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) 양도소득 과세방식: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<input type="checkbox"/> 적격스톡옵션: 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, ② 연간 행사금액 1억원 이하 등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8의2②)

<개정이유>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

| 종 전 | 개 정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<input type="checkbox"/> 특례내용 -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% 단일세율 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: '14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- 헤드쿼터 인증기업* : 적용기한 폐지 *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(사업전략, 인사관리, R&D 등) 지원·조정 업무 수행 - 그 외 기업: '16.12.31.(2년 연장) |

<적용시기> '15.1.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(단, 14.1.1.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도 개정규정 적용)

④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(조특법 §30)

<개정이유>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 유도

| 종 전 | 개 정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, 노인(60세 이상) 및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내용: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% 감면 <신 설> <input type="checkbox"/> 업종 : 농업, 임업, 제조업 등 -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, 금융보험업 등 제외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: '15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기간 연장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-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(3년→5년)] (좌 동)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복직하는 분부터 적용

⑤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(조특법 §86의3)

<개정이유> 자영업자의 폐업 및 노후대비 지원

| 종 전 | 개 정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납입 시 ○ 공제 한도 : 300만원 ○ 공제 대상 : 종합소득금액 <input type="checkbox"/> 수령 시 ○ 소득공제 받은 원금 : 비과세 ○ 운용수익 : 이자소득 과세 ○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: 비과세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 대상 소득 변경 ○ (좌 동) ○ 종합소득금액→사업소득금액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]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 소득 과세 ○ (좌 동) |

<적용시기> '16.1.1.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. 다만, '15.12.31.까지 신청 시 개정 규정 적용 가능

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(조특법 §87)

<개정이유> 서민·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제고

| 종 전 | 개 정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○ (내용) 납입금액 40% 공제 - 요건 :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- 한도 : 연간 납입액 120만원 | -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*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,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'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- 한도 : 연간 납입액 240만원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⑦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(조특법 §88의4⑬)

<개정이유> 다른 기부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전환

| 종 전 | 개 정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별 공제 방식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치자금기부금*, 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 : 세액공제** * 10만원 이하 : 100/110 세액공제 ** 기부금×15%(3천만원 초과분 25%) <input type="checkbox"/> 우리사주조합기부금* : 소득공제 *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, 필요경비 산입 가능 |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공제 → 세액공제로 전환 |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⑧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(조특법 §126의2)

<개정이유>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

| 종 전 | 개 정(국회 계류중)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소득공제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금액 : 총급여 25%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율 - 신용카드 : 15% 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: 30% - 전통시장·대중교통비 : 30% - '14년 하반기, '15년 상반기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'13년 사용분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* : 40% * '13년 대비 '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<신 설>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한도 : 300만원(전통시장·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: '16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(좌 동) - '15년 하반기, '16년 상반기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'14년 사용분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* : 50% * '14년 대비 '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|

<적용시기> '15.7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

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

총급여

(-) 근로소득공제

근로소득금액

(-) 인적공제

(-) 연금보험료공제

(-) 특별소득공제

(-) 그 밖의 소득공제

(+) 소득공제 한도초과액

종합소득 과세표준

(X) 기본세율

산출세액

(-) 세액감면 및 공제

결정세액

(-) 기납부세액

차감징수세액

총급여

연봉(급여+상여+수당+인정상여) - 비과세소득

기본공제

(1명당 연 150만원 공제)

추가공제

경로우대 · 장애인 · 부녀자 · 한부모

보험료, 주택자금, 기부금(이월분)

개인연금저축,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부금
주택마련저축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,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,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

세액감면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)

근로소득세액공제

자녀세액공제(기본공제대상자녀, 6세이하, 출생·입양)

연금계좌세액공제

특별세액공제(보장성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)

납세조합공제

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

외국납부세액공제

월세액세액공제



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

| 항목 | 구 분 | 공제금액· 한도 | 공 제 요 건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구분 | 소득요건* | 나이요건** |
| 인적공제 | 기본공제 | 1명당 150만원 | 본인 | × | × |
| | | | 배우자 | ○ | × |
| | | | 직계존속 | ○ | 만 60세 이상 |
| | | | 형제자매 | ○ |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|
| | | | 직계비속 (입양자 포함) | ○ | 만 20세 이하 |
| | | | 위탁아동 | ○ | 만 18세 미만 |
| | | | 수급자 등 | ○ | × |
| | | | *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) | | |
| | **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| | | | |
| | 추가공제 | 경로우대 | 1명당 100만원 |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| |
| 장애인 | | 1명당 200만원 |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| | |
| 부녀자 | | 50만원 |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·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·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| | |
| 한부모 | | 100만원 |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(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) | | |
| 연금보험료 공제 | | 전액 |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·공무원 연금법 등(공적연금관련법)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·기여금 | | |
| 특별 소득공제 | 보 험 료 | 건강보험료 | 전액 |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| |
| | |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| 전액 |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| |
| | | 고용보험료 | 전액 |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| |

| 항목 | 구 분 | 공제금액· 한도 | 공 제 요 건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그 밖의 소득공제 | 주택마련 저축공제 | 연 300만원 한도 | <p>주택마련저축* 불입액의 40% 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* '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종전한도로 '17년까지 공제 가능 -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)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(2009.12.31. 이전 가입만 해당) * 주택마련저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(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) · 주택청약종합저축(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) · 근로자주택마련저축(월 납입액 15만원 이하) <p>※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('12.12.31.) 만료</p> | | | | | | | |
| |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| <p>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% [30%(2013년), 50%·30%(2014년), 100%*·50%* *·30%(2015년) :벤처조합·벤처 기업 출자]</p> <p>* 1,500만원 이하 ** 5,000만원 이하</p> | <p>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</p> <p>※ 공제한도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63 999 1305 1137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'13년 이전 투자</td> <td>종합소득금액의 40%</td> </tr> <tr> <td>'14년 투자</td> <td>종합소득금액의 50%</td> </tr> <tr> <td>'15년 이후 투자</td> <td>종합소득금액의 5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공제한도 | '13년 이전 투자 | 종합소득금액의 40% | '14년 투자 | 종합소득금액의 50% | '15년 이후 투자 |
| 구분 | 공제한도 | | | | | | | | | |
| '13년 이전 투자 | 종합소득금액의 40% | | | | | | | | | |
| '14년 투자 | 종합소득금액의 50% | | | | | | | | | |
| '15년 이후 투자 | 종합소득금액의 50% | | | | | | | | | |
| 그 밖의 소득공제 |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|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- 총 급 여 액 25%) × 15%(30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5% 공제대상 사용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용카드 사용금액 - 30% 공제대상 사용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· 직불카드(체크카드), 직불전자지급수단·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· 전통시장 사용분(카드, 현금영수증) · 대중교통 이용분(카드, 현금영수증) ※ '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10% 추가 공제 '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20% - 본인,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(소득금액 제한 받으나, 나이제한 없음)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- 300만원과 총급여 20%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,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(최대 500만원) | | | | | | | |
| |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| 연 400만원 한도 |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| | | | | | | |

| 항목 | 구 분 | 공제금액· 한도 | 공 제 요 건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그밖의 소득공제 |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| 임금삭감액의 50% (공제한도 : 1천만원) |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(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-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) × 50% | | | | | | |
| |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| 연 300만원 한도 |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%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| | | | | | |
| 그밖의 소득공제 |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| 저축납입액의 40% (연240만원 한도) |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(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) | | | | | | |
|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| | 2,500만원 한도 |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 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이 2천5백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- 적용대상 : 주택자금공제, 주택미련저축, 소기업· 소상공인 공제부금, 투자조합출자 등(2014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)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, 우리시주조합 출자금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| | | | | | |
| 세액감면 |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|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%(100%) 감면 |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(병역근무기간 제외 : 한도 6년)인 사람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'12.1.1. (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'14.1.1.) ~'15.12.31.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%(100%)* 세액감면 * 50%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- 2014.1.1. 이후 중소기업에 (재)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* 100%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- 2013.12.31. 이전 중소기업에 (재)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자 | | | | | | |
| | 근로소득 세액공제 | 연 50만원 (66만원, 74만원) 한도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산출세액</th> <th>공제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30만원 이하</td> <td>55%</td> </tr> <tr> <td>130만원 초과</td> <td>71만5천원+130만원 초과금액의 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공제한도> ·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: 74만원 ·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: 74만원 - [(총급여액 - 3천3백만원)×0.008] →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·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: 66만원 - [(총급여액 - 7천만원)×1/2] →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| 산출세액 | 공제금액 | 130만원 이하 | 55% | 130만원 초과 | 71만5천원+130만원 초과금액의 30% |
| 산출세액 | 공제금액 | | | | | | | | |
| 130만원 이하 | 55% | | | | | | | | |
| 130만원 초과 | 71만5천원+130만원 초과금액의 30% | | | | | | | | |

| 항목 | 구 분 | | 공제금액· 한도 | 공 제 요 건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|
| 세액공제 | 자녀 세액 공제 | 기본공제대상 자녀 | - | 1명 15만원, 2명 30만원, 3명이상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|
| | | 6세이하 | - |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|
| | | 출생·입양 | - | 1명당 30만원 |
| 연금 계좌 세액 공제 | | 과학기술인 | 연금계좌 납입액 (연 700만원 한도, 연금저축은 400만원) × 12% (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5%) |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|
| | | 퇴직연금 |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· 개인형퇴직연금(IRP) 근로자 납입액 |
| | | 연금저축 | |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|
| 세액공제 | | 보장성 보험료 | 보험료 납입액 (100만원 한도) × 12% |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|
| | |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| 보험료 납입액 (100만원 한도) × 15% |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|
| | 의 료 비 | ㉠ 본인 | 의료비 공제대상금액* × 15% *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· 본인, 65세이상, 장애인 난임시술비 : 한도 없음 · 그 외 부양가족 : 연 700만원 | 총급여액 3%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- 공제 가능 의료비 · 진찰,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(미용·성형수술비용 제외) ·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(건강증진 의약품 제외) · 장애인보장구 구입·임차비용 · 시력교정용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용 (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) · 보청기 구입비용 ·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-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|
| | | ㉡ 65세 이상 | | |
| | | ㉢ 장애인 | | |
| ㉣ 난임시술비 | | | | |
| ㉤ 그 외 부양가족 | | | | |
| | | 구 분 | 의료비 공제금액 | |
| | | ㉤ < 총급여액 3% | (㉠+㉡+㉢+㉣) - (총급여액 3% - ㉤) | |
| | | ㉤ >= 총급여액 3% | (㉠+㉡+㉢+㉣) + 적은금액[(㉤ - 총급여액 3%), 700만원] | |
| ※ ㉡, ㉢, ㉣, ㉤ : 나이·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| | | | |

| 항목 | 구 분 | | 공제금액· 한도 | 공 제 요 건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|--|
| 세액공제 | 교육비 | 취학전 아동 | 교육비 공제대상금액* × 15% |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(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) | 보육료, 학원비·체육시설 수강료, 유치원비, 방과후수업료(특별 활동비·도서구입비 포함, 재료비 제외), 급식비 |
| | | 초등학생 중·고생 | *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· 취학전아동, 초·중·고생 : 1명당 300만원 한도 · 대학생 : 1명당 900만원 한도 | | 교육비, 학교급식비, 교과서대, 방과후학교 수강료(도서구입비 포함, 재료비 제외), 국외교육비 (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), 교복구입비(중·고생 50만원 이내) |
| | | 대학생 | | | 교육비, 국외교육비 (국외유학요건 폐지) |
| | | 근로자 본인 | · 본인, 장애인 : 한도 없음 | 교육기관 교육비, 대학·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,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| |
| | | 장애인 특수 교육비 | |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*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| |
| | 특별 세액공제 | 정치 자금 기부금 | 10만원 이하 | 기부금의 100/110 | 정당, 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(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) |
| | | | 10만원 초과 | · 3천만원 이하 : 기부금의 15% · 3천만원 초과 : 기부금의 25% * 공제한도 : 소득금액의 100% | |
| | | 기 부 금 | 법정 기부금 | · 3천만원 이하 : 기부금의 15% |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|
| | | | 지정 기부금 (종교체 외) | · 3천만원 초과 : 기부금의 25% * 공제한도 | 사회복지·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|
| | | | 우리사주조 합기부금 | · 법정기부금 : 근로소득금액의 100% ·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근로소득금액의 30% |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|
| 지정 기부금 (종교단체) | · 지정(종교단체 외) : 근로소득금액의 30% · 지정(종교단체) : 근로소득금액의 10% | 종교의 보급,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(그 소속 단체를 포함)에 기부한 기부금 | | | |
| 표준세액공제 | | 연 13만원 |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* 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| | |
| 납세조합공제 | |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% |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% 세액공제 | | |

| 항목 | 구 분 | 공제금액· 한도 | 공 제 요 건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| 이자상환액의 30% | '95.11.1~'97.12.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'95.11.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|
| | 외국납부 세액공제 | 외국납부세액 |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※ 세액공제한도 $\text{근로소득 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국외근로소득금액}}{\text{근로소득금액}}$ ·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|
| | 월세액 세액공제 | 월세액 지급액 (750만원 한도)의 10% |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) 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*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 소지가 같을 것 * 2014년부터 '확정일자' 받을 요건 삭제 |